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

제출연월일 : 2006. 8. 2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조항 “제24조제3항”을 “제29조제5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중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

다.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여 “보조금등”으로 표현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물품을 제외한 자금만을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내지 제10조·제14조 내지 제18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신청)”을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을 하며, 동조제2항제4호중 “보조금등의 금액 그 산출기초”를 “보조금액의 산술기초”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차입금”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등의 교부조건)”을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을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로 하고, 동조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보조금등”을 각각 “보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보조금등의 반환)”은 “(보조금의 반환)”으로 하고, 동조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제8조제2항·제10조·제14조제2항·제16조 내지 제18조중 “보조금등”을 각각 “보조금”으로 한다.

제19조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보조금등"이라 함은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보조금"---------- 자금------. ②----------보조금----------.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대상) 보조금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조(보조대상) 보조금----------.
제4조(보조신청) ①보조금등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보조금----------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 그 산출기초 5. (생 략)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 7. (생 략)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차입금에 관한 사항 9.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조금액의 산술기초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8----------수입금액----- 9.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4.(생 략)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등의 교부조건) ①교육감은 보조	제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보조금---------- ---------- ----------. 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 ---------- ---------- ---------- --------
제8조(교부방법) ① (생 략) ②공공단체에 대하여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에 보조금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교부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 2.(생 략) 3.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보조금---------- ---------- ----------보조금---------- ---------- --보조금---------- ----------. ---------- ---------- ----------. ②----------보조금 ---------- ---보조금---------- ---------- ---------- ----------. 1. ~ 2.(현행과 같음) ③ ---------- --보조금---------- ---------- ---------- -.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 조례에 의거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 ---------- ---------- ---------- ----------보조금 ----------.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생 략) ②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현행과 같음) ②---------- ---------- ----------보조금- ---------- ----------.
제15조(보조금등의 반환)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 ---------- 보조금---------- ---------- ----------.

제16조(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금등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6조(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금----------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1. ~ 4.(생 략)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 ---------- ---보조금----------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보조금---------- ----------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시행령법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